

「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정희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: 김영길 의원 외 7인

3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구미시 관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지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- 정의(안 제2조)
- 대여사업의 등록(안 제3조)
- 등록기준(안 제4조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9조, 제30조
 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61조, 제67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관내에서만 사업소를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하여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에 의거하여 등록 기준 대수를 ‘30대 이상 50대 미만’으로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에 근거해 50대 이상이었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우리시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의 초기 장벽을 낮추며, 기존 사업자의 영업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렌터카 사업자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례의 취지에 대해 기존 업체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, 조례 제정 이후 등록 기준 완화 내용을 관내 기존 자동차 대여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